

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내역서

- 건 명: 사근동 빗물펌프장 유입수로 개선공사
- 계약상대자: (주)윤산업개발 대표 함세운
- 계약 금액: 금245,323,000원(금이억사천오백삼십이만삼천원)
- 계약 일: 2015. 4. 13.
- 준공 기한: 2015. 8. 12.
- 선금신청액: 금49,830,000원(금사천구백팔십삼만원정-20%)
- 검토 내역

연번	선금지급 조건	검 토 결 과
1	○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-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 ○ 용역 계약-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	○ 계약금액: 금245,323,000원 ⇒ 적정
2	○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	○ 기성금 지급 없음 ⇒ 적정
3	○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여부	○ G2B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⇒ 적정
4	○ 선금요청적정요율: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하 - 공사(20억 원 미만) 선금의무지급율: 계약금액의 50%이상 - 다만,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	○ 선금지급신청율: 계약금액의 20% ⇒ 적정
5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1일 이상인지 여부	○ 잔여 계약이행기간 선금지급 신청일: 2015.4.28. ~ 준공기한: 2015.8.12.(105일) ⇒ 적정

- 검 토 사 항 : 선금지급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급함이 타당함